

의과대학 책임교수 운영 세부기준

제정 2016. 12. 30.

개정 2023. 01. 01.

제1조(목적) 이 세부기준은 [교육과정운영 기준]에 의거 각 과정별 책임교수 및 부책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정 책임교수·부책임교수) 각 과정에는 1인의 책임교수를 두며, 책임교수를 보좌하는 1-4인의 부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명) 책임교수 및 부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책임교수 및 부책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기 중 책임교수 및 부책임교수의 유고로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직무) ①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각 교육과정의 기획 및 설계, 진행, 평가 등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총괄
2. 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력
3. 각 교육과정의 온라인 수업 관련 시스템 관리(강의자료 업로드), 출결관리, 성적 입력
4. 평가시행 2주 이내에 정답과 성적 공개 및 문제풀이 시행
5. 학생들의 성적 관리 - 지도교수 및 학생지도운영위원회와 연계(개정 2023.01.01.)
6. 과정평가회 참석
7. 과정 관련 자료 및 과정운영보고서 의학교육실로 제출 - 과정 개선 계획과 최소 2회 이상의 회의록 포함

② 부책임교수는 책임교수를 보좌하며, 과정운영 실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운영비 지원) 각 과정의 기획 운영, 평가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